



한국기업금융평가원

컨설팅 안내



신용보증기금

■ 신용보증기금

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코딧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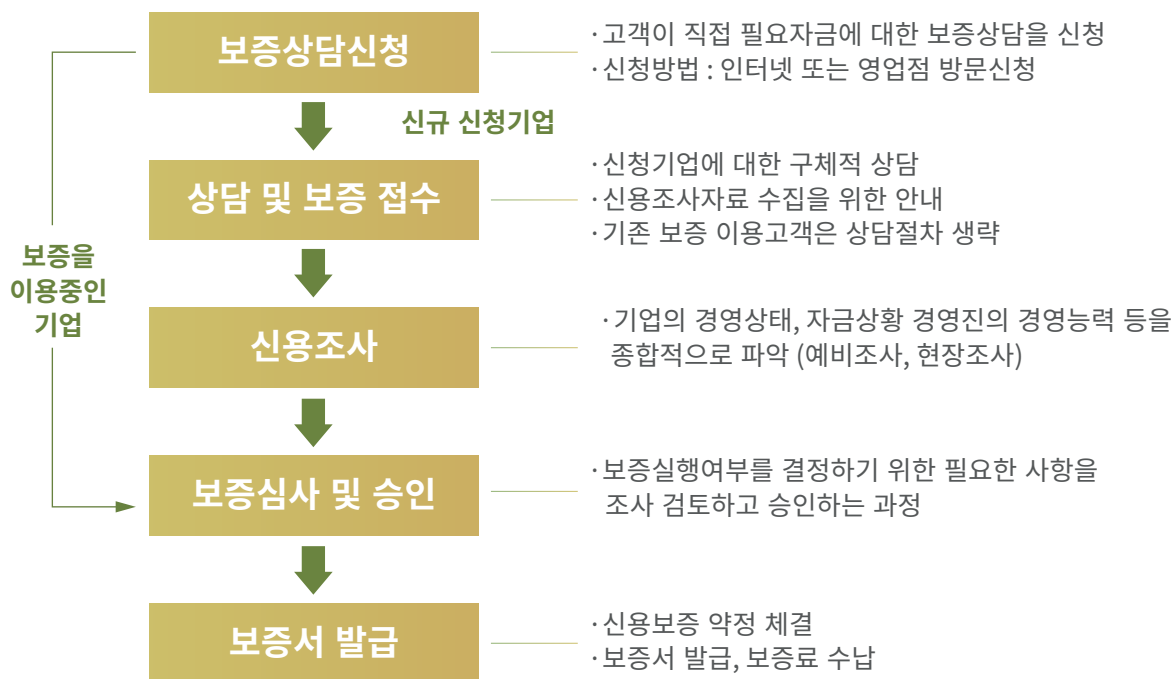


코딧 신용보증기금은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흐름도



■ 신용보증절차



신용보증기금

■ 보증대상기업

개인기업

·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
법인기업

·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

기업단체

·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

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·접수하여 운영

■ 보증제한

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보증제한대상

1. 휴업중인 기업
2.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
3.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
4. 기업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(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)
5. 보증금지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2호~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
6. 보증금지대상 제2호~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경영자인 기업
7.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
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일로부터 3년 경과한 기업
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,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
신보의 매출채권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
8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
위 제7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중 신보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
위 제7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
위 제7호의 기업의 실제경영자
9. 위 제7호 가목,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9 실제경영자인 기업
10. 허위자료 제출기업
11. 신보, 기보, 보증재단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(사고)기업

보증제한

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보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운용하는 것

■ 보증금지

신보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.

보증금지대상

1.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
2. 위 “1”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신보법 시행령 제2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
3. 위 “1”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
4. 위 “1”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

보증금지

보증취급이 불가능한 것